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컨설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안 성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형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컨설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in Private Companies
－ Focusing on consulting adjustment effect －



HANSUNG
UNIVERSITY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안 성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형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컨설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in Private Companies
－ Focusing on consulting adjustment effect －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안 성 진

안성진의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컨설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 & 컨설팅 학과

컨버전스 컨설팅 전공

안 성 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설립, 운영, 청산 시 각각 차이가 있으며, 세금 절감, 위험분산, 자본조달, 경영의 전문화 등 여러 동기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즉,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투명하게 나타나고, 세율의 차이에 따라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대외적 신용도 및 경영효율성의 향상, 유한책임으로 인한 책임의 한정 등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장점은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200여개 개인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개인기업의 원활한 법인전환을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에 따라 컨설팅이 법인전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의 배경을 찾았으며,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전환 장애인식과 조세관련 인식이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을 수 없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컨설팅은 조절변수로서 법인전환 장애인식과 법인전환 인식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컨설팅 수진을 통해 법인전환 장애인식을 해소하여 법인전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법인전환 시 진행절차의 복잡성, 과도한 비용의 발생, 자본조달의 부담과 법인전환 후 조세부담의 증가, 경영여건의 악화 등 법인전환 장애인식 요인을 컨설팅 수진을 통하여 경감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어서 컨설팅 수행이 법인전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법인전환 장애인식 요인을 컨설팅을 통하여 경감하거나 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원활한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컨설팅의 활발한 지원이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개인기업, 법인기업, 법인전환,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 컨설팅, 법인전환 인식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1.3 연구의 범위	3
II. 이론적 배경	4
2.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4
2.1.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정의	4
2.1.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6
2.1.2.1 설립 시의 차이	6
2.1.2.2 운영 시의 차이	7
2.1.2.3 청산 시의 차이	8
2.1.2.4 과세제도의 차이	9
2.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
2.2.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정의	11
2.2.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21
2.2.2.1 법인전환에 따른 효익과 비용	31
2.2.2.2 법인전환 방법	41
2.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2.3.1 법인전환 장애인식	2
2.3.2 조세관련 인식	3
2.3.3 납세자 제재와 보상	4
2.3.3.1 납세자 제재	3
2.3.3.2 납세자 보상	3
2.4 조절요인으로서 컨설팅	7

2.4.1 컨설팅의 정의	7
2.4.2 컨설팅의 특성 및 유형	9
2.4.3 컨설팅의 분야	3
2.5 종속변수로서 법인전환 인식	3
2.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선행연구 정리	43
2.6.1 선행연구의 검토	4
2.6.2 선행연구와 차별성	7
 III. 연구설계	 39
3.1 연구모형	39
3.2 연구가설	40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의 구성	44
3.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4
3.3.1.1 법인전환 장애인식	4
3.3.1.2 조세관련 인식	2
3.3.1.3 납세자 제재와 보상	4
3.3.1.4 컨설팅	4
3.3.1.5 법인전환 인식	2
3.3.2 설문지의 구성	4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5
3.4.1 자료수집	45
3.4.2 자료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4
3.4.3 자료 분석	46
 IV. 연구결과	 47
4.1 표본의 특성	47
4.2 기술통계 분석	50

4.3 타당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5
4.3.1 타당도 분석	5
4.3.2 신뢰도 분석	5
4.4 상관관계 분석	6
4.5 가설의 검증	6
4.5.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
4.5.2 컨설팅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절효과)	56
4.5.2.1 법인전환 장애인식과 법인전환 인식 간의 컨설팅 조절효과	66
4.5.2.2 조세관련 인식과 법인전환 인식 간의 컨설팅 조절효과	86
4.5.2.3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법인전환 인식 간의 컨설팅 조절효과	07
4.5.2.4 조절회귀분석 결과	7
V. 결 론	73
5.1 결과의 요약	73
5.2 연구의 시사점	74
5.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안 제시	47
참 고 문 헌	76
부 록	81
ABSTRACT	87

표 목 차

<표 2-1> 개인기업과 법인가기업의 차이	1 1
<표 2-2> 법인전환 방법	51
<표 2-3> 경영컨설팅 유형의 분류	1 3
<표 2-4> 경영컨설팅의 분야	2 3
<표 2-5> 선행연구 요약	83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3 4
<표 3-2> 설문지 구성	54
<표 4-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 4
<표 4-2>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0 5
<표 4-3> KMO 및 Bartlett의 검정	25
<표 4-4> 설명된 총 분산	35
<표 4-5> 회전 성분 행렬	45
<표 4-6> 공통성	55
<표 4-7> 신뢰도 통계 (법인전환 장애인식)	6 5
<표 4-8> 항목 총계 통계 (법인전환 장애인식)	7 5
<표 4-9> 신뢰도 통계 (조세관련 인식)	7 5
<표 4-10> 항목 총계 통계 (조세관련 인식)	7 5
<표 4-11> 신뢰도 통계 (납세자 제재와 보상)	8 5
<표 4-12> 항목 총계 통계 (납세자 제재와 보상)	8 5
<표 4-13> 신뢰도 통계 (법인전환 인식)	8 5
<표 4-14> 항목 총계 통계 (법인전환 인식)	9 5
<표 4-15> 신뢰도 분석 결과 요약	9 5
<표 4-16> 상관관계 분석	06
<표 4-17> 모형 요약	26
<표 4-18> 분산 분석	26
<표 4-19> 계수	36
<표 4-20>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	4 6
<표 4-2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가설검정 결과	5 6

<표 4-22> 법인전환 장애인식에 미치는 컨설팅 조절효과 검증	6· 6
<표 4-23> 조절회귀분석 결과(법인전환 장애인식)	7· 6
<표 4-24> 조세관련 인식에 미치는 컨설팅 조절효과 검증	8· 6
<표 4-25> 조절회귀분석 결과(조세관련 인식)	9· 6
<표 4-26> 납세자 제재와 보상에 미치는 컨설팅 조절효과 검증	0· 7
<표 4-27> 조절회귀분석 결과(납세자 제재와 보상)	1· 7
<표 4-28>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2 7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93
---------------------	----



I.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동일한 이익이 실현되어도 세법상의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절세목적으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법인기업 전환으로 모든 개인기업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소득이 적은 영세 개인기업들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의 법인전환을 고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세부담의 경감 목적 이외에도 대외적 신용도 및 경영효율성의 향상, 유한책임으로 인한 책임 한정 등 요인은 다양하다.

법인전환 시 절세효과가 존재하여도 모든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장애요소,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제제와 보상 등 개인기업의 다양한 특성이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개인기업의 원활한 법인전환을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에 따라 컨설팅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법인전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의 배경을 찾았으며,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및 납세자 제재와 보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하고, 컨설팅의 필요성이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개념과 차이를 확인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및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보상으로 선정하여 이 요인들이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의 필요성에 따라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된 학술자료 등을 통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관련 조세제도와 컨설팅에 관한 연구내용을 살펴본다.

실증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의 대표로 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SPSS 2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도분석,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등을 설명한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정의와 차이점, 법인 전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등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서 납세자 제재와 보상 등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살펴보고, 컨설팅과 법인전환 인식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도 살펴본다.

제 3장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확인한다.

제 4장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수집된 표본을 SPSS 2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해석한다.

제 5장은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후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안에 대하여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2.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1.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정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기업은 사업주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의 시작과 운영, 폐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법인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¹⁾하고, 엄격한 기준과 법률에 의하여 해산과 청산을 하게 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경상적 반복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정아영, 2015).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로서, 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법률적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유영진, 2013).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제의 주체가 된다(이재혁, 2017).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기업은 자연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법인기업은 법률상 인격체로 인정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철우, 2010).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관련 세법 및 상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세법 상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

1) 민법 제31조.

담한다. 개인은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취급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담을 진다(엄재욱, 2018).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소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한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이 인정된 것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상법 상 규정²⁾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³⁾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적용하도록 한다.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범위를 보면 거주자는 거주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 상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⁴⁾ 단, 거주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는 경우 일정 사유가 있을 때에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⁵⁾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⁶⁾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⁷⁾

2)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3) 국세기본법 제4절 제13조.

4)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5)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4항.

6)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3조~제76조).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⁸⁾가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계속 기업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연도를 정하고 이에 포함되거나 포함되게 될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⁹⁾. 청산 소득은 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 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¹⁰⁾.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일정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¹¹⁾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엄재욱, 2018).

2.1.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2.1.2.1 설립 시의 차이

개인기업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통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하면 개업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음식점과 같은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구청을 통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업 등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인·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기업은 출자 자본금 없이 대표자의 출자금(또는 차입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정아영, 2015). 개인은 복잡한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설립할 수 있으나, 허가나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개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이철우, 2010). 개인기업은 단독기업이므로 사업주의 의사결정에 의해 설립할 수 있다(이기성, 2010). 개인기업은 단독기업이므로 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창설할 수 있다(한용수, 2003).

7) 법인세법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제77조~제90조).

8)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0)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11) 2014년부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30%에서 10%로 인하 하였다(단, 미등기토지 등은 40%).

반면, 법인기업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따라 주주들을 구성하여 자본금을 확정하고, 상법의 정해진 절차대로 정관을 작성¹²⁾하여 등기절차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정아영, 2015). 법인기업은 우선 당해 기업의 주체가 되는 법인 설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이기성, 2010). 즉, 법인기업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주주들을 구성하고, 자본금을 확정하여 상법상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절차를 종료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법인기업은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고 이사 등의 구성원에 대한 요구조건도 완화되었지만, 개인기업에 비하여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이철우, 2010).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의 주체가 되는 법인의 설립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법인기업은 공동기업이므로 당해 사업에 참여한 자본주 또는 동업자를 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한용수, 2003).

2.1.2.2 운영 시의 차이

개인기업은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의 별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매출액 이상의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되면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연 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면 재무제표가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재무제표 보고 없이 간편장부나 단순추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정아영, 2015).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단독 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이윤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기업이윤의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변정희, 2012). 개인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의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합명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출자자는 출자액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갖게 되는데,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따른 책임이 무한책임이지만, 법인기업의 출자자는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이철우, 2010). 개인기업의

12) 상법 제289조.

경우 개인기업주는 기업경영상의 책무에 대하여 개인재산까지를 처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이기성, 2010).

법인기업은 법인통장을 보유하고 매출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재무제표의 예금자산에 기말자산이 정확히 계상되어야 한다. 법인기업은 법인계좌에서 인출되는 매입 관련 대금과 급여 이외에 대표이사의 자금 인출금액과 자금 인출의 원인이 불명확한 금액에 대해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어¹³⁾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통장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추징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이외에도 대표이사 상여처분이라는 높은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정아영, 2015). 법인기업의 출자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는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이윤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출자자들의 지분에 의하여 분배하게 된다(변정희, 2012). 법인기업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법규정에 따라야 하고, 통제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도는 개인에 비하여 높다(이재혁, 2017). 따라서 개인기업에 비하여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주주가 많을 경우 투명한 경영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이유로 세무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매출액인 경우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세무간섭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이철우, 2010).

2.1.2.3 청산 시의 차이

개인기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자 본인 의사로 손쉽게 폐업할 수 있다(엄재욱, 2018).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개인기업은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 종료한다(정아영, 2015). 즉,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하게 요구되는 바가 없다(이기성, 2010). 개인기업은 청산을 하고자 의사결정을 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만으로 청산이

1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능하다(이철우, 2010).

법인기업은 상법 상의 절차를 거쳐 폐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주주 및 임원 등 이해관계인이 많으며 사업종료 시 폐업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엄재욱, 2018). 법인기업은 폐업신고와 해산 및 청산절차와 관련한 법적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법인격이 소멸된다. 법인기업은 주주총회에서 법인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의 신고,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산종결등기를 마쳐야 한다(정아영, 2015). 법인기업은 상법 상 해산등기 등 청산절차를 추가로 수행해야만 청산이 종결된다(이기성, 2010). 법인기업은 폐업신고와 더불어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이철우, 2010).

2.1.2.4 과세제도의 차이

1) 과세소득의 개념 및 차이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으로 경상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까지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또한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반면, 소득세법은 제한적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으로 일정한 원천에서 경상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불규칙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이철우, 201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소득원천설을 기본으로 순자산증가설을 가미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이익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 소득으로 하고 있다(이기성, 2010).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분된 소득 중에는 세무 정책적 목적으로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엄재욱, 2018).

2) 과세기간 차이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세법상 일정한 한정을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삼는 기간을 말한다(이기성, 2010).

과세기간이란 기간과세의 개념으로 소득이 가득될 때마다 각각 과세하지 않고 과세기간 동안 가득된 소득을 합계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세방법은 누진세율구조와 결합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기여한다(엄재욱, 2018).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¹⁴⁾,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규칙 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이 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¹⁵⁾(유영진, 201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14) 소득세법 제5조.

15) 법인세법 제6조.

<표 2-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	상대적으로 단순함	상대적으로 복잡함
운영	무한책임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업의 이윤 독점 자본조달 제한 신용도 취약	유한책임 각종 법규의 규제 지분에 의한 이윤 배분 자본조달 용이 신용도 우월
청산	상대적으로 단순함	상대적으로 복잡함
적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 자료: 이기성(2010)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편집함.

2.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2.2.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정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조직형태를 법인조직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는 개인에 귀속된 재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 경영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용어사전).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가 있으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기업주가 본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해 오던 기업을 개인기업의 기업주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엄재욱, 2018).

법인전환의 의미는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사업자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이영미, 2016).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임채철, 2015).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유영진, 2013).

개인사업자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대외공신력의 제고, 세금의 절감, 경영 합리화,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며,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자형태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이철우, 2010).

종합하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독립된 법인기업에 이전하여 법인기업이 경영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2.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법인전환을 수행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법인전환에 따른 효익과 비용 및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되면 법인전환을 언제 할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정시기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기간이 달라져서 소득세와 법인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엄재욱, 2018).

2.2.2.1 법인전환에 따른 효익과 비용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의 효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인 유지와 발전에 유리하다. 개인기업은 기업주의 교체, 사망 등 기업주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 분산도 가능하다(이기성, 2010).

둘째,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향상되고, 자본조달이 보다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대외적 신용도가 높다고 평가 받으며, 법인기업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자금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의 차입이나 주식발행에 의존하므로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임채철, 2015).

셋째, 절세효과 및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율의 차이로 인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세무상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다(엄재욱, 2018).

그러나 법인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기업 중에는 법인전환이 불필요하거나,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기업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서는 법인기업보다는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며, 소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세 부담이 법인기업보다 작으므로 세 부담 절감을 위해서도 개인기업 형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유영진, 2013).

둘째, 법인전환 시 소요비용이 발생하고 전환절차가 복잡하다. 법인전환 소요비용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서, 각종 세금

에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이 있고,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도 발생하며, 공인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이영미, 2016).

셋째,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적 의사결정이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복잡한 회계처리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계자료의 해석 및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개인기업을 운영할 때 보다 많이 필요하다(엄재욱, 2018). 그리고 세금 부담에 대한 관리에서도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투자와 배당의 결정 문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와 배당의 금액 결정, 주주구성의 문제, 나아가 차후 지분에 대한 상속 등 개인기업에 비하여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엄재욱, 2018).

2.2.2.2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방법은 조세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조세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세금감면이 있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방법이 있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이 있다.

법인전환 방법의 결정은 법인기업의 출자방법과 조세지원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법인기업을 새로 설립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법인기업으로 통합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사업용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이 개인기업이 소유하던 사업용 자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법인전환 관련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데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지출되는 세금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 및 기업이 처

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전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엄재욱, 2018).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과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이 있다.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이 있다.

법인전환 방법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법인전환 방법

구 분	방 법	비 고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	1. 현물출자 2. (세금감면) 사업양도양수 3. 중소기업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31조, 32조)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	4. (일반) 사업양도양수	

* 자료: 이철호(2017)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편집함.

본 절에서는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방법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과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하였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

상의 개념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재산출자 즉, 현물출자가 인정된다¹⁶⁾. 이는 상법 상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원시정관에 기재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감사인의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현물출자 시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이 부실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장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둘째,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의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법인전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법인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지원규정이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기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 등을 법인에 이전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 즉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며¹⁷⁾ 법인전환 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이영미, 2016). 또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¹⁸⁾.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조세특

16) 상법 제290조.

17)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법인에 이전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기업이 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¹⁹⁾.

둘째, 법인기업의 취득세 면제 규정이 있다. 토지와 건물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취득만이 아닌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도 해당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고²⁰⁾,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유영진, 2013).

셋째, 개인기업이 적용받은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기업은 폐업을 하고, 개인기업이 폐업 하면 폐업 전에 받았던 각종 조세지원혜택이 폐업으로 인해 소멸한다. 이러한 상황은 법인전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지원받고 있던 조세지원혜택을 법인기업이 승계하는 규정을 두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기 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²¹⁾ 또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²²⁾에 해당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았으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승계하여 잔존 감면기간까지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엄재욱, 2018).

나)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단점

반면, 다음 사항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현물출자는 상법 상 변태설립사항으로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감사인에 대한 수수료, 감정평가기관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2 제4항.

2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감정평가수수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수수료, 기타 법인전환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임채철, 2015).

둘째,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이 되는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과 사업의 승계과정이 같은 기간에 진행되며 법인설립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유영진, 2013).

셋째, 법인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지원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엄재욱, 2018).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업이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과 주점업 및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유영진, 2013). 또한,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엄재욱, 2018).

둘째,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개인기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지원에서 배제된다(한용수, 2003).

셋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²³⁾. 이는 법인전환으로 인해 기업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²⁴⁾.

2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2) 사업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의미한다.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처럼 변태설립과정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절차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보다 간단하다.

둘째, 조세지원효과가 일반사업양도양수보다는 많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보다는 적다. 일반사업양도양수는 특별한 지원규정은 없고 법인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조세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엄재욱, 2018). 조세감면 지원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시와의 차이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 취득세 감면 규정은 동일하지만 국민주택 채권은 전액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과 관련한 조세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와 동일하다.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기업에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월과세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이월과세 되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유영진, 2013).

둘째,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와 동일하다. 개인기업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법 소정요건을 갖춘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 된다²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2 제4항.

셋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개인기업의 공제받지 않은 감면세액 등이 승계되어 감면 받을 수 있다.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조세지원요건과 동일하다. 법인전환 방법은 개인기업주가 법인설립 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평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엄재욱, 2018).

3) 중소기업 통합을 통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통합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기업이 출자자인 개인²⁶⁾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²⁷⁾.

중소기업통합은 사업장별로 할 수 있으며, 한 개인기업주나 법인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단위로 분리해서 통합 할 수 있으며 당해기업 전체가 통합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유영진, 2013).

사업장별로 통합한다는 것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전체가 아닌 여러 개의 사업장 중에서 분리해서 통합가능한 각각의 사업장 단위를 통합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의 통합이므로 중소기업의 판단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은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판단을 한 후 중소기업의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통합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재욱, 2018).

일반적으로 상법 상의 법인과 법인이 상호 통합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결

26)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합 또는 개인기업과 개인기업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통합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전술한 합병과 구별하고 있다(이기성, 2010).

중소기업 통합을 통한 법인전환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절차나 조세지원 효과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신설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는 반면에 중소기업 통합을 통한 법인전환 방법은 기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한다는 것이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과 기업이 합치는 것을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조세지원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과 통합되는 법인이 개인기업의 조세감면을 승계하는 사항, 취득세의 면제 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및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규정과 달리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없다(엄재옥, 2018).

중소기업 통합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²⁸⁾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시 조세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어야 한다.

둘째, 사업장별로 그 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으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기업의 주주는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이어야 하고, 통합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29) 조세특례제한법 31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2.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개인기업의 납세자가 처한 환경적 특성을 찾아 분석해 봄으로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환경을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하고 기업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모든 영역을 포함한 전체를 기업환경이라고 한다(김동민, 2018, 재인용).

기업의 내부환경은 기업내부의 통제 가능한 내부적 환경요인을 말하며 내부환경 요인에는 인사, 재무, 생산, 마케팅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기업의 인적 자원, 자금조달능력, 설비의 융통성, 가격경쟁력, 유통경로, 주주,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생산성, 복리후생제도, 노동조합 등이 있다(김동민, 2018).

기업의 외부환경이란 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요인을 의미한다(이봉기, 2003).

본 연구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부환경 요인으로서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을 살펴보고, 기업의 외부환경요인으로서 조세지원제도 상 납세자 제재와 보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1 법인전환 장애인식

법인전환 장애인식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고소득임대인이 법인전환에 따른 행정절차나 내부관리, 창업비용, 조세부담, 자본조달 등의 문제에 대해 갖는 부담감을 법인전환 장애인식으로 제시하였다(이재혁, 2017).

법인전환 장애인식은 납세자가 법인전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절세목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복잡성(법인전환 전후 관리복잡성에 대한 인식), 자금부담(법인전환에 따른 비용 및 자금부담에 대한 인식), 경영책임(법인전환 후 법인경영에 대한 책임인식) 등 3개 요인을 법인전환 장애인식으로 제시하였고, 관리복잡성이 클수록,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경영책임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이철우, 2010).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전환이 지연되거나 전환 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요인을 복잡한 절차, 창업비용 과다, 변경절차 복잡, 조세부담, 자금부담, 법인유지여건미비, 낮은 투명성, 조세부담과중, 지원정책부족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법인전환 장애인식 중 조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이 가장 크고, 지원정책의 부족, 변경절차의 복잡, 과다한 창업비용의 순서로 법인전환 장애인식 요인을 제시하였다(한용수, 2003).

종합하면, 법인전환 장애인식이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법인전환 후 발생하는 경영관리와 경영책임, 자금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2.3.2 조세관련 인식

조세관련 인식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고소득임대인의 조세관련 인식은 세무행정의 부담감, 탈세에 대한 인식, 과세의 공정성, 타인의 세금납부의 성실성, 본인의 세금납부의 성실성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이재혁, 2017).

조세관련 인식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지, 탈세를 범죄라고 인식하는지, 납부한 세금이 잘 활용되는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세금이 너무 과중하고 강압적으로 징수되는지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러한 조세에 대한 인식의 영향에 따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성향은 달라진다(이철우, 2010). 법인기업은 법률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

문에 법적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에 의한 통제가 개인기업에 비하여 심한 편이며, 탈세가 적발되면 법인기업의 추정세액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에 대한 인식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철우, 2010).

조세관련 인식이란 납세자의 세금 및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으로서, 납부한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여부, 납세자 본인 이외의 타인도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발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세금이 과중하고 강압적으로 징수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다(이현주, 2009).

종합하면, 조세관련 인식이란 납세자가 갖는 세금 및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으로서 납부한 세금의 사용이 잘 되는지, 본인과 타인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지, 세금이 강압적으로 징수되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2.3.3 납세자 제재와 보상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세무신고에 의해 가처분소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과소 신고의 유인을 갖는다(배수진, 2010).

따라서 납세자 제재는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수단으로서 이러한 정책수단 중 세무조사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 다양한 조세관련 연구들은 제재 중심의 정책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 성실한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

히 세무신고 행위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의 제공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배수진, 2010. 재인용). 이와 같이 보상 정책은 자신의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에게는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배수진, 2010).

2.3.3.1 납세자 제재

납세자 제재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의미하여,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납세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지니는 세무조사이다(배수진, 2010).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납세자 제제는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과 성실신고 미이행시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채철, 2015).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확립할 목적으로 신고·납부 등을 비롯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성경만, 2018).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납세자에 대한 제재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 시 수시선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길중석, 2014).

높은 가산세율이 세무조사 비율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억제효과가 있고, 과소신고 의사결정은 여러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탈루행위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배수진, 2010. 재인용).

종합하면, 납세자 제제는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3.3.2 납세자 보상

납세자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상에는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차별적인 세무정책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 이론적 연구에 등장하였다(배수진, 2010). 대표적 연구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경제적 유인인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이론적 모형이 있다(배수진, 2010. 재인용).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납세자 보상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의 추가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1개월 연장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연구하였다(임채철, 2015).

납세자 보상이란 납세자로서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이면서 국가로서는 비용이고, 납세자로서는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이면서 국가로서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권일환, 2008).

지금까지의 과세당국은 많은 성실신고 유인정책들을 내놓았으나 납세자들에게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고, 그 중요성도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납세자들은 성실신고 유인책을 단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였다(최용용, 배현정, 2005).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검토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로는 납세실적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는 납세연금제도의 도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납세실적에 연계하여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들이 있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공영시설의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중 일부에 보호자의 납세실적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하였다(이동기, 2002).

성실납세자의 우대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표창은 물론 성실신고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의 면제, 징수유예 등에 대한 납세담보의 면제, 금융거래 상의 우대조건 부여, 공법상 경과실범의 집행면제, 각종 공공시설 이용 상의 우

대조치 등을 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상황 등록 및 공개, 국공립 성실납세자 묘역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비경제적 보상 위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신천식, 1999). 즉, 비금전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하면, 납세자 보상이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 당국이 제시하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혜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4 조절요인으로서 컨설팅

2.4.1 컨설팅의 정의

컨설팅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컨설팅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르면 컨설팅이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및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주형근, 2016). 경영컨설팅엔지니어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컨설팅이란 특별히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기업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해결방안들이 적기에 실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정의하고 있다(주형근, 2016).

컨설팅(consulting)이란 용어는 주로 경영, 부동산, 금융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교육, 법률, 웨딩 등 각 사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일반화 되고 있고, 국어사전에서 컨설팅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의 대상과 분야가 기업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컨설팅의 의미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류재희, 2017).

경영컨설팅은 방법론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고객기업과의 계약에 입각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성과를 개선시키고 나아가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치 있는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다(전우소, 2017).

경영컨설팅은 기업이 직면한 문제점 해결과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했다(여우현, 2015).

컨설팅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김후진, 2014).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거나, 미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경우,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황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컨설팅이라 한다(조재룡, 2011).

컨설팅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조영대, 2005).

한편 해외 학자들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조언하는 조직의 Staff들도 실질적으로는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Block, 2011).

경영컨설팅이란 고객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그 사람은 적절한 과학적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의 최고 경영층의 기능과 관련된 기업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자문으로 구성되며, 교정적이고 진보적이며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적 지식의 창출에 공헌하는 것이다(Ciampi, 2009).

비즈니스 컨설팅이란 특별한 훈련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고객이 경영상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추천하는 것이며, 또한 고객이 이러한

해결안의 실행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조언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Milan Kubr, 2002).

경영컨설팅은 경영상 문제점이나 사업기회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서비스를 의미하며, 경영컨설턴트는 경영상 이슈와 관련한 해결방안이나 활동을 권고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행을 도와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Barcus & Wilkinson, 1995).

내부 또는 외부의 컨설턴트가 고객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조직과 개인, 조직 내부부서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 보았다(Williams & Woodward, 1994).

컨설턴트를 예전의 단순한 조력자로 보던 관점에서 진보하여 전문직업적인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면서 컨설팅을 특별한 훈련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기업경영상 문제들을 도출해 내고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추천하고 필요시 해결책의 실행에도 도움을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이다(Greiner & Metzger, 1983).

컨설팅의 프로세스는 정보의 제공, 문제의 진단 및 해결, 진단에 근거한 제안, 제안의 실행 지원, 고객기업의 학습 촉진, 변화 관리, 지속적인 조직 효과성 개선 등의 주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Turner, 1982).

과제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컨설턴트가 과제의 수행자들에게 컨설팅의 절차를 활용하여 과제의 내용, 수행 절차 등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teele, 1975).

종합하면 기업의 경영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2.4.2 컨설팅의 특성 및 유형

경영컨설팅의 기본적 특성은 전문 서비스, 자문 서비스, 독립 서비스, 일시적인 서비스, 상업적인 서비스의 특성을 갖는다(주형근, 2016).

경영컨설팅이란 선행연구자들의 정의와 같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자문 활동으로 경영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경영상 주요 이슈와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 분석, 종합 정리하여 보다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현실적 개선방안과 해결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달성, 경영과 비즈니스 상의 다양한 문제해결,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견과 활용, 학습의 증대, 변화의 실행 등과 같은 일반적인 5가지의 경영컨설팅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곧 경영컨설팅의 특성이다(Kubr, 1997).

컨설팅의 마케팅 측면 연구에서 컨설팅 프로젝트 유형을 고객이 요구하는 문제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고 상급은 Brain이라 하여 고급 컨설턴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며,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는 중급은 Grey Hair, 하급은 Procedure라고 하여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므로 경험이 적은 컨설턴트가 투입되어도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을 의미한다(Maister, 1982).

경영컨설팅의 도입 및 수행을 조직의 성과 향상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 한다는 측면으로 보고, 경영컨설팅의 도입 및 수행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유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영컨설팅 유형을 혁신유형 분류 차원에 따라 부문혁신경영컨설팅, 부문개선경영컨설팅, 전사혁신경영컨설팅, 전사개선경영컨설팅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장영, 1997).

<표 2-3> 경영컨설팅 유형의 분류

구 분		유형	특성
외형적 분류		자문서비스	고객에게 조언을 하는 자문역할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음.
		독립서비스	컨설팅의 결과물은 의뢰인의 친분이나 조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함.
		전문서비스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함.
		일시적인 서비스	컨설턴트는 의뢰인 요청 시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완료 시에 이직함.
		상업적인 서비스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이므로 적절한 이익이 확보되도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내용적 분류	혁신성 분류	부문개선컨설팅	컨설팅 업무영역이 특정분야에 한정됨. (공정개선, 인사관리, 설비보전, 마케팅 등)
		부문혁신컨설팅	업무영역이 좁고 특정분야에 한정되지만, 변화의 정도가 크고 신속한 변화를 요구함. (공정재편성, 공정자동화 등)
		전사개선컨설팅	업무영역이 넓고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음. (사무자동화, 프로세스개선, 전사 품질경영 등)
		전사혁신컨설팅	업무영역이 넓고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음.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등)
	복잡성 분류	상급(Brain)	당면 과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고급 컨설턴트가 많이 투입됨.
		중급(Grey Hair)	당면 과제가 중간 정도의 복잡성이 있음.
		하급(Procedure)	당면 과제가 보편화되어 있어 경험이 많지 않은 컨설턴트가 투입됨.

자료 : 여우현(2015)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편집함.

2.4.3 컨설팅의 분야

경영컨설팅 대상 분야를 명시적으로 분류한 기준은 없지만 글로벌 컨설팅 환경(Global Consulting Marketplace 2007-2010)에서의 분류는 재무 및 경영관리, 전략컨설팅, 생산관리컨설팅, 정보기술, 인적자원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신상복, 2012. 재인용). 최근의 컨설팅 영역은 과거의 전통적인 영역인 인사, 재무, 생산, 마케팅, 정보기술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 주제들로 확대되고 있다(주형근, 2016).

<표 2-4> 경영컨설팅의 분야

분야	컨설팅 세부 테마별 분류
전략	비전설정, 재무전략 및 전략적 목표설정, 전략적 제휴시스템 구축, 합병 후 통합 전략, 글로벌 전략 수립 등.
인사	목표관리, 연봉제, 성과급 임금체계, 직무분석, 조직 재설계, HRM 시스템구축, 신인사제도, 직무만족 및 성과평가 시스템 등.
재무	내부통제, 재무관리의 업무정형화, 기업 인수합병전략, 사업 위험관리, 기업가치 향상 전략, M&A전략수립,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등.
생산	설계 및 제조원가 혁신, 공정작업관리, 생산 및 재고관리시스템구축, 표준원가 및 목표원가관리, 제품설계 및 공정 관리 등.
마케팅	상품기획, 목표시장 공략전략, 시장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가격전략, 홍보전략, 유통전략, 디자인전략, 고객관리전략 등.
조직운영	프로세스 개선, BSC,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구매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생산성 향상, 조직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중장기 정보화 모델구축, ERP 구축 모델설정, 온라인 비즈니스 컨설팅, 정보화 통합전략, 정보화 도입 전략 등.
기타	자금조달(정책자금,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전략(사업타당성, R&D, 기술금융, 기술이전 등), 인증컨설팅(벤처, 이노비즈, 신기술 등) 등.

자료 : 주형근(2016)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편집함.

2.5 종속변수로서 법인전환 인식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법인전환 시 대부분의 유형에서 절세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자의 경영방침이나 운영형태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절세가 기대될 때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성향은 충분히 예상된다(이철우, 2010).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세목적 동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혁, 2017).

즉, 이철우(2010)와 이재혁(2017)은 법인전환 인식은 절세목적을 갖는다고 보았다.

법인전환 인식을 법인전환에 대한 긍정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경향,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유리한지, 타인에 대한 권유의향, 기업이미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임채철, 2015).

종합하면, 법인전환 인식은 절세목적, 법인전환에 대한 긍정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경향,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선호도, 타인에 대한 권유의향, 기업이미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선행연구 정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법인세율의 인하가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 법인전환 관련 세법규정과 개선 방안, 법인전환 동기, 납세자의 특성, 조세부담과 관련한 기업형태의 선택 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2.6.1 선행연구의 검토

개인기업 법인전환시의 조세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영자에게 법인전환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법인전환 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박종호, 2002). 연구결과,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이 약 35%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배당을 한다면 약 40% 이상을 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위해 내부에 유보할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사외 유출되는 총조세부담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박종호, 2002).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 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전환방법에 따라 조세 감면효과를 비교분석하여 법인전환과 관련한 조세상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김중운, 2003). 연구결과, 과세소득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조세부담면에서 유리하고, 3천만원 초과시에는 법인기업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전환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조세부담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세 이외의 조건들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중운, 2003).

기업이 개인이나 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요인별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직형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규모기업에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상근, 200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에 대한 연구로서, 한용수(2003)는 법인전환 동기를 이미지제고, 절세, 경영관리, 유한책임, 자본조달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자본금규모 기준은 조세동기요인, 경영관리요인, 이미지요인이 차이를 나타냈고, 법인전환 형태에서는 조세동기 요인이 차이를 나타냈으며, 개인기업의 운영기간별 법인전환 동기에서도 조세동기 요인이 차이를 나타냈다(한용수, 2003).

법인전환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연구로서, 법인전환 관련 규정에 있어서 해석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각 해석의 견해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김영순, 2005).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형태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세율,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추연길, 2007). 사례분석결과 세금 부담측면에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 보다 유리하지만,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세금 이외의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연길, 2007).

납세자의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기업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이철우(2010)는 절세효과가 있어도 모든 납세자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납세자의 특성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철우, 2010). 연구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절세금액이 클수록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며, 소득금액이 많거나, 법인기업 전환 관련 업무가 복잡하고 전환 후 경영관리가 복잡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법인기업 전환 후 경영책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우, 2010).

기업을 시작할 때 조직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법인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처리와 동일하게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하였다(변정희, 2012). 또한,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법인기업도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차이가 조직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변정희, 2012).

개인기업의 법인기업 전환 시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법인기업 전환 이유를 파악하여 적정규모를 분석하고 현행 세법규정의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세법규정이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감면의 적용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정아영, 2015). 연구결과 소득에 비례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아영, 2015).

임채철(2015)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이후 이를 회피하려는 법인전환 사례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찾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상 납세자의 제재와 보상 중 어떤 요인이 법인전환의식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효성이 있는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영향으로 신고 소득률이 높아지는 경우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재혁(2017)은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임대사업자와 법인임대사업자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확인하고, 절세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임대인의 특성이 법인전환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임대인들의 세무지식이 낮을수록 절세목적 법인전환을 적극 고려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에게 세무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세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이재혁, 2017). 또한, 고소득 임대인들은 법인전환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과세 관청입장에서는 임대인들을 법인전환하게 함으로서 임대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세수확보와 조세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이재혁, 2017).

엄재욱(2018)은 현행 세법에 있는 법인전환 지원규정의 유용성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기존연구에 덧붙여 법인전환이 기업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법규정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어 법인전환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꺼리는 이유, 현행 세법규정이

법인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도, 법인전환 이후 부과되는 의무와 세제상 불이익이 법인전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세법규정에 대한 개선사항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였다(엄재욱, 2018).

2.6.2 선행연구와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전환과 관련해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법인전환 동기분석,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조세효과분석, 관련규정 상의 문제점 등 관련 문헌과 법 규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의 내부환경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의 내부환경 요인은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으로 구분하고 외부환경 요인은 납세자 제재와 보상을 독립변수로 정의하여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의 필요성에 따라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요약은 <표 2-5>와 같다.

<표 2-5>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시사점
엄재욱(2018)	법인전환에 미치는 세법규정 연구	설문조사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가장 선호	법인전환비용을 보전하는 세제혜택이 필요함
이재혁(2017)	고소득 개인임대사업자들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임대인들의 세무지식이 낮을수록 법인전환을 적극 고려	임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홍보
임채철(2015)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제재와 보상, 소득세부담수준이 법인전환인식에 영향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정아영(2015)	관련 세법규정의 개선방안	설문조사	법인전환시 세제유인을 많이 제공	법인전환 규정의 개선방안 제시
변정희(2012)	조직형태 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분석	표본조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 없음	세부담이 조직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이철우(2010)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납세자 특성이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조사	법인전환시 매출액, 소득금액 클수록 부정적. 세무지식, 절세 기대값은 긍정적	법인전환 유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추연길(2007)	개인·법인 조직형태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설문조사	법인전환 의사결정시 조세부담 이외의 요인도 고려함	보다 정교한 모형 설정의 필요성 제시
김영순(2005)	법인전환시 관련 규정 해석의 문제점 분석	문헌연구	각 해석의 문제점 발견하여 개선방안 제시	법인전환 규정의 합리적 해석과 개선방안 제시
한용수(2003)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의 동기분석	설문조사	각각의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임	법인전환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필요성 제언
박상근(2004)	조직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설문조사	조세부담과 결손여부가 유의한 영향	선택적 조합과세를 통한 조세중립성 제고방안 제시

출처 : 엄재욱(2018), 이재혁(2017)의 선행연구 요약을 재구성 및 추가함.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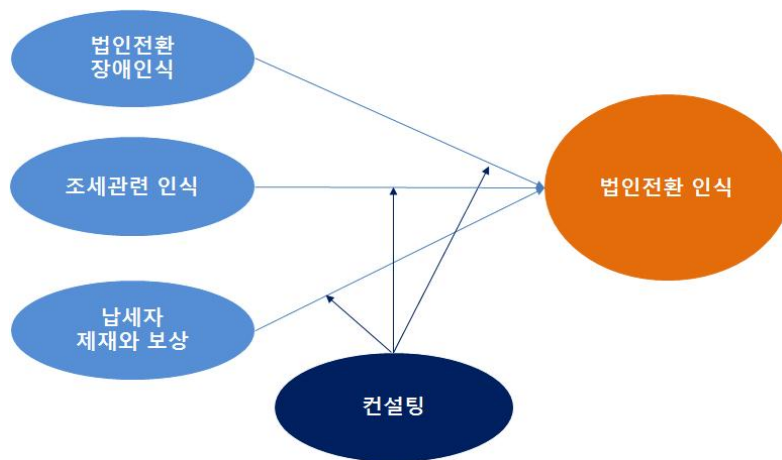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철우(2010), 임채철(2015), 이재혁(2017)의 연구를 근거로 기업 내부환경 특성인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과 기업 외부환경 특성으로서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컨설팅이 법인전환 인식에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를 근거로 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기업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법인전환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기업환경 특성이 컨설팅을 조절변수로 하여 법인전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차이점은 기업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종합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조절요인로서 컨설팅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연구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이철우(2010)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상황이 있다고 보았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법인전환 장애인식은 관리복잡성, 자금부담, 경영책임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조세관련 인식은 탈세윤리, 세무행정, 사회인식, 세무조사, 국가재정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납세자 상황은 매출액, 소득금액, 세무지식, 절세기대값, 조직형태, 업종, 연령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재혁(2017)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상황이 있다고 보았다. 법인전환 장애인식으로 행정절차, 법인경영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조세관련 인식은 세무행정, 탈세인식, 과세의 공정성, 세금납부의 성실성(타인), 세금납부의 성실성(본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납세자 상황은 종합소득금액, 임대소득금액, 세무지식, 절세기대값, 최종학력, 성별, 연령을 선정하였다.

임채철(2015)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납세자 제재와 납세자 보상이 있다고 보았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납세자 제재는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과 성실신고 미이행시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선정하였다. 납세자 보상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의 추가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1개월 연장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I> 법인전환 장애인식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 조세관련 인식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조절요인으로서 컨설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컨설팅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IV> 컨설팅은 법인전환 인식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IV-1> 컨설팅은 법인전환 장애인식이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IV-2> 컨설팅은 조세관련 인식이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IV-3> 컨설팅은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의 구성

3.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연구목적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므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본으로 하여 선행연구들의 항목들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변수의 측정 항목들을 개념화 하였다.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의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는데,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법인전환 인식, 조절변수로는 컨설팅을 사용하였다.

3.3.1.1 법인전환 장애인식

법인전환 장애인식이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법인전환 후 발생하는 경영관리와 경영책임, 자금의 부담이라고 조작 정의한다.

3.3.1.2 조세관련 인식

조세관련 인식이란 납세자가 갖는 세금 및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으로서 납부한 세금의 사용이 잘 되는지, 본인과 타인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지, 세금이 강압적으로 징수되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라고 조작 정의한다.

3.3.1.3 납세자 제재와 보상

납세자 제재란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납세자 보상이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 당국이 제시하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혜택을 의미한다고 조작 정의한다.

3.3.1.4 컨설팅

컨설팅이란 특정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조작 정의한다.

3.3.1.5 법인전환 인식

법인전환 인식은 타인에 대한 법인전환 권유의향,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후

기업의 사회적 인식 향상, 법인전환이 기업의 절세목적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라고 조작 정의한다.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법인전환 장애인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법인전환 후 발생하는 경영관리와 경영책임, 자금의 부담	이재혁(2017) 이철우(2010) 한용수(2003)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가 갖는 세금 및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이재혁(2017) 이철우(2010) 이현주(2009)
납세자 제재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성경만(2018) 임채철(2015) 길중석(2014) 배수진(2010)
납세자 보상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당국이 제시하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혜택	임채철(2015) 권일환(2008) 최용용, 배현정(2005) 이동기(2002) 신천식(1999)
컨설팅	특정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류재희(2017) 전우소(2017) 주형근(2016) 여우현(2015) 김후진(2014) 조재룡(2011) Block(2011) Ciampi(2009) Milan Kubr(2002) Williams & Woodward(1994)
법인전환 인식	타인에 대한 법인전환 권유의향, 법 인기업으로 전환한 후 기업의 사회 적 인식 향상, 법인전환이 기업의 절세목적에 기여하는지 여부	이재혁(2017) 임채철(2015) 이철우(2010)

3.3.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질문의 범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 컨설팅 유무, 법인전환 인식 그리고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신뢰성 또는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을 추출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첫 번째 부류는 법인전환 장애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조세관련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부류는 납세자 제재와 보상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부류는 법인전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부류는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컨설팅을 수행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류는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으로 경영자의 성별, 연령, 매출규모, 지역, 학력, 사업업종, 사업기간으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평가에는 리커트 평가척도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 구성

구분	하위변수	문항수	출처
독립변수	법인전환 장애인식	5	이재혁(2017)
	조세관련 인식	5	이철우(2010)
	납세자 제재와 보상	5	임채철(2015)
조절변수	컨설팅 수입 여부	1	
종속변수	법인전환 인식	3	이재혁(2017) 이철우(2010) 임채철(2015)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매출규모, 지역, 학력, 사업업종, 사업기간	7	
합계		26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4.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및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는데 있다. 이에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전환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은 개인기업의 경영자와 컨설팅을 받지 않은 개인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3.4.2 자료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 대상은 법인전환 컨설팅을 받은 개인기업 경영자와 받지 않은 개인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로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전달 및 회수하였고 예외적으로 팩스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75부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238부이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하여 203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3.4.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통계소프트웨어 SPSS 22.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였고,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수는 총 203개로서,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매출 규모, 지역, 학력, 사업업종, 사업기간 등으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누적(%)
성별	남자	178	87.7	87.7
	여자	25	12.3	100.0
컨설팅	경험 있음	123	60.6	60.6
	경험 없음	80	39.4	100.0
연령	30세 미만	4	2.0	2.0
	30세 이상 ~ 40세 미만	31	15.3	17.3
	40세 이상 ~ 50세 미만	63	31.0	48.3
	50세 이상 ~ 60세 미만	79	38.9	87.2
	60세 이상	26	12.8	100.0
매출규모	5억 미만	113	55.7	55.7
	5억 이상 ~ 10억 미만	56	27.6	83.3
	10억 이상 ~ 50억 미만	30	14.7	98.0
	50억 이상	4	2.0	100.0

지역	서울	108	53.2	53.2
	경기	61	30.0	83.2
	인천	20	9.9	93.1
	충남	3	1.5	94.6
	충북	2	1.0	95.6
	부산	3	1.5	97.0
	대구	1	.5	97.5
	경남	3	1.5	99.0
	경북	2	1.0	100.0
학력	고졸이하	3	1.5	1.5
	전문대졸	18	8.9	10.3
	대학교졸	177	87.2	97.5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포함)이상	5	2.5	100.0
업종	제조업	87	42.9	42.9
	전기, 가스, 수도업	14	6.9	49.8
	건설업	10	4.9	54.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51	25.1	79.8
	숙박 및 음식업	12	5.9	85.7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6	7.9	93.6
	기타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13	6.4	100.0
사업기간	3년 미만	3	1.5	1.5
	3~5년 미만	8	3.9	5.4
	5~10년 미만	36	17.7	23.2
	10년 이상	156	76.8	10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78명(87.7%), 여자가 25명(12.3%)이며,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4명(2.0%), 30세 이상~40세 미만이 31명(15.3%), 40세 이상~50세 미만이 63명(31.0%), 50세 이상~60세 미만이 79명(38.9%), 60세 이상이 26명(12.8%)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기업을 운영한 사업경력이 있는 경영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상황을 볼 때, 해당 경영자의 연령층인 40, 50, 60대가 82.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대상의 표본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규모는 5억 원 미만이 113명(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이상~10억 미만이 56명(27.6%), 10억 이상~50억 미만은 30명(14.8%), 50억 이상이 4명(2.0%)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 108명(53.2%), 경기 61명(30.0%), 인천 20명(9.9%), 기타 14명(6.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 3명(1.5%), 전문대졸 18명(8.9%), 대학교졸 177명(87.2%),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포함)이상 5명(2.5%)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7명(42.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51명(25.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16명(7.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4명(6.9%)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이 156명(76.8%)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이 36명(17.7%), 3~5년 미만은 8명(3.9%), 3년 미만은 3명(1.5%)을 나타내고 있다.

4.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에 대한 정규성(normality)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신건권의 기술통계량분석 결과의 제시 기준은 표준편차가 3이하, 왜도의 절대값 3이하, 첨도의 절대값 3 이하이면 개별 측정변수들은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건권, 2013).

<표 4-2>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장애인식1	3.75	0.683	-0.012	-0.284
장애인식2	3.64	0.824	0.015	-0.589
장애인식3	3.55	0.862	-0.208	-0.372
장애인식4	3.71	0.796	-0.085	-0.489
장애인식5	3.64	0.805	-0.062	-0.479
조세인식1	3.28	0.846	-0.016	0.171
조세인식2	3.44	0.844	-0.228	0.063
조세인식3	3.04	0.828	-0.030	0.139
조세인식4	3.05	0.883	-0.140	0.205
조세인식5	2.88	0.842	-0.074	0.465
제재와보상1	3.43	0.730	-0.096	0.116
제재와보상2	3.25	0.778	-0.025	-0.282
제재와보상3	2.99	0.893	-0.013	-0.116
제재와보상4	2.98	0.892	0.091	-0.105
제재와보상5	3.34	0.856	-0.393	0.606
법인전환1	3.39	0.719	-0.349	-0.021
법인전환2	3.50	0.685	-0.382	-0.196
법인전환3	2.99	0.939	-0.234	0.084

4.3 타당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4.3.1 타당도 분석

본 연구는 설문을 이용하여 실증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가설검정에 앞서 독립변수인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조절변수인 컨설팅,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의 측정변수에 대하여 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개념 또는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고, 요인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개념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같은 개념의 연구를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타당성 검정이라고 한다.

요인분석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 시키고,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치가 0.4 이하 일 때 해당 변수를 제거한다(채서일 외, 2015).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연구에서 향후의 연구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당도 분석 즉, 탐색적 요인분석은 먼저 측정변수 수와 표본수가 적정한지 나타내는 KMO척도(조건: >0.8 , 최소 >0.5), 변수와 변수들 간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닌 지를 확인하는 Bartlett 구형성 검정(조건: $p < 0.05$)을 각각 실시한 후, 회전 제곱합 적재 값의 %누적값(조건: >0.6)을 확인하여 공통으로 묶인 요인 모두가 전체 측정변수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며,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성분(요인)별 요인적재값과 교차요인적재값을 확인하여 집중타당도(조건: >0.5) 및 판별타당도(조건: <0.4)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는 변수정제과정(단일차원성 확보)으로 이루어진다(강성천, 2015).

본 연구에서는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법인전환 인식을 종속변수로, 컨설팅을 조절변수로 하여 우선 각 변수들에 대해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의 모든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도 분석결과 <표 4-3>은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를 나타낸다.

KMO 값은 0.871로 우수한 수준인 0.8 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수준(p) 0.000($p < 0.05$)으로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분산 <표 4-4>에서 추출된 전체 요인의 설명력인 %누적값은 72.176%(>60%)으로 높게 나타나 4개 요인의 총분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표 4-5>참조.

한편, 측정변수는 척도 순환과정을 통해 요인적재치 0.4미만과 이론적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적재된 항목인 제재와 보상1, 제재와 보상5를 제거하고,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1.0이상, 요인적재값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19개의 문항 중 2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17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치는 일반적인 기준인 0.5를 상회하고 있고, 공통성도 일반적인 기준인 0.5를 초과하므로 집중타당도가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KMO 및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71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1877.129
	df	120
	유의수준	0.000

<표 4-4> 설명된 총 분산

구성 요소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로딩			회전 제곱합 로딩		
	총계	분산의 %	누적률 (%)	총계	분산의 %	누적률 (%)	총계	분산의 %	누적률 (%)
1	6.465	40.404	40.404	6.465	40.404	40.404	3.810	23.811	23.811
2	2.178	13.611	54.016	2.178	13.611	54.016	3.414	21.337	45.148
3	1.741	10.882	64.898	1.741	10.882	64.898	2.234	13.963	59.111
4	1.165	7.278	72.176	1.165	7.278	72.176	2.090	13.065	72.176
5	.672	4.198	76.374						
6	.609	3.805	80.178						
7	.471	2.946	83.124						
8	.438	2.739	85.862						
9	.394	2.465	88.328						
10	.372	2.326	90.654						
11	.336	2.102	92.756						
12	.297	1.856	94.612						
13	.268	1.674	96.286						
14	.242	1.510	97.796						
15	.209	1.303	99.099						
16	.144	.901	100.000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표 4-5> 회전 성분 행렬^a

구분	구성요소			
	1	2	3	4
장애인식2	.850			
장애인식1	.825			
장애인식4	.815			
장애인식5	.800			
장애인식3	.769			
조세인식4		.856		
조세인식3		.841		
조세인식5		.792		
조세인식1		.715		
조세인식2		.633		
법인전환2			.814	
법인전환1			.763	
법인전환3			.742	
제재와보상4				.862
제재와보상3				.841
제재와보상2				.703
고유값	3.810	3.414	2.234	2.090
분산의 %	23.811	21.337	13.963	13.065
누적률(%)	23.811	45.148	59.111	72.176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맥스

a. 5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6> 공통성

	초기	추출
장애인식1	1.000	.741
장애인식2	1.000	.776
장애인식3	1.000	.666
장애인식4	1.000	.738
장애인식5	1.000	.708
조세인식1	1.000	.598
조세인식2	1.000	.654
조세인식3	1.000	.771
조세인식4	1.000	.839
조세인식5	1.000	.719
제재와보상2	1.000	.645
제재와보상3	1.000	.757
제재와보상4	1.000	.757
범인전환1	1.000	.737
범인전환2	1.000	.777
범인전환3	1.000	.666

추출 방법: 프린시פל 구성요소 분석

4.3.2 신뢰도 분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 될 수 있는 개념이다(채서일, 2015).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내적일관성법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내적일관성법은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로서, 동일한 개념을 지닌 두 개 이상의 항목들을 동시에 측정하여 이들이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

하고 비교하는 방법이다(김동민, 2018). 표준화 알파계수 값은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 시킨 것으로서 몇 개의 측정항목으로 측정되고 측정항목 간 타당성이 인정된 하나의 개념에 대해 알파 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이 0.60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김동민, 2018).

개념을 새롭게 개발하는 탐색연구에서는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초연구 분야나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8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구동모, 2015).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의 크기를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함으로써 계수 값을 크게 할 수 있으며, 제거할 항목들은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들이다(김동민, 2018).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단일차원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된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 종속변수로 활용된 법인전환 인식, 조절변수인 컨설팅 등 측정변수에 대해 SPSS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법인전환 장애인식(N=5)에 대한 전체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이 0.899 ($\alpha > 0.6$)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4-7>, <표 4-8> 참조).

<표 4-7> 신뢰도 통계 (법인전환 장애인식)

Cronbach의 알파	항목의 N
.899	5

<표 4-8> 항목 총계 통계 (법인전환 장애인식)

	항목 삭제 시 척도 평균	항목 삭제 시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총계 상관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장애인식1	14.54	7.963	.741	.881
장애인식2	14.65	7.080	.804	.864
장애인식3	14.73	7.186	.726	.883
장애인식4	14.58	7.344	.767	.873
장애인식5	14.65	7.448	.726	.882

조세관련 인식(N=5)에 대한 전체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은 0.885 ($\alpha > 0.6$)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4-9>, <표 4-10> 참조).

<표 4-9> 신뢰도 통계 (조세관련 인식)

Cronbach의 알파	항목의 N
.885	5

<표 4-10> 항목 총계 통계 (조세관련 인식)

	항목 삭제 시 척도 평균	항목 삭제 시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총계 상관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조세인식1	12.41	8.521	.629	.882
조세인식2	12.25	8.318	.680	.870
조세인식3	12.65	8.082	.759	.852
조세인식4	12.64	7.509	.838	.832
조세인식5	12.81	8.205	.711	.863

납세자 제재와 보상(N=3)에 대한 전체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은 0.762 ($\alpha > 0.6$)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4-11, <표 4-12> 참조).

<표 4-11> 신뢰도 통계 (납세자 제재와 보상)

Cronbach의 알파	항목의 N
.762	3

<표 4-12> 항목 총계 통계 (납세자 제재와 보상)

	항목 삭제 시 척도 평균	항목 삭제 시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총계 상관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제재와보상2	5.96	2.513	.546	.732
제재와보상3	6.23	1.988	.667	.590
제재와보상4	6.24	2.162	.574	.703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N=3)에 대한 전체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은 0.784 ($\alpha > 0.6$)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4-13>, <표 4-14> 참조). 법인전환3을 제거하는 경우 알파계수 값은 0.803 으로 증가하지만, 제거하지 아니하여도 0.784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표 4-13> 신뢰도 통계 (법인전환 인식)

Cronbach의 알파	항목의 N
.784	3

<표 4-14> 항목 총계 통계 (법인전환 인식)

	항목 삭제 시 척도 평균	항목 삭제 시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총계 상관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법인전환1	6.49	2.063	.645	.691
법인전환2	6.38	2.069	.697	.649
법인전환3	6.90	1.648	.574	.803

신뢰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4-15> 참조).

<표 4-15> 신뢰도 분석 결과 요약

변수	항목	항목삭제시 Cronbach α	Cronbach α
장애인식	장애인식1	.881	.899
	장애인식2	.864	
	장애인식3	.883	
	장애인식4	.873	
	장애인식5	.882	
조세인식	조세인식1	.882	.885
	조세인식2	.870	
	조세인식3	.852	
	조세인식4	.832	
	조세인식5	.863	
제재와 보상	제재와보상2	.732	.762
	제재와보상3	.590	
	제재와보상4	.703	
법인전환	법인전환1	.691	.784
	법인전환2	.649	
	법인전환3	.803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을 활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독립변수는 0.762 ~ 0.899, 종속변수는 0.784로 모든 변수의 값이 일반적인 수준인 0.6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4.4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 1 사이로 나타나며, ± 1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김동민, 2018).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법인전환 장애 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에 대하여 각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바, 분석결과는 <표 4-16>와 같다.

<표 4-16> 상관관계 분석

항목		장애 인식	조세 인식	제재와 보상	법인 전환
장애 인식	Pearson 상관계수	1	.458**	.199**	.443**
	유의수준(양쪽)		.000	.005	.000
	N	203	203	203	203
조세 인식	Pearson 상관계수	.458**	1	.282**	.566**
	유의수준(양쪽)	.000		.000	.000
	N	203	203	203	203
제재와 보상	Pearson 상관계수	.199**	.282**	1	.237**
	유의수준(양쪽)	.005	.000		.001
	N	203	203	203	203
법인 전환	Pearson 상관계수	.443**	.566**	.237**	1
	유의수준(양쪽)	.000	.000	.001	
	N	203	203	203	203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분석결과를 보면, 법인전환 장애인식은 조세관련 인식과 0.458**,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0.199**, 법인전환 인식과 0.443**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조세관련 인식은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0.282**, 법인전환 인식과 0.566**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법인전환 인식과 0.237**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4.5 가설의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y 의 변화에 대해서 독립변수 x 하나로 결정하기보다는 2개 이상의 독립변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를 단순회귀분석이라 하고 2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이라 한다(이일현, 2014).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하나의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본다(이훈영, 2013).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일현, 2014).

4.5.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으로서 독립변수인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606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인 조정된 R^2 은 35.8%(35.8%, $0 \leq R^2 \leq 1$)로 나타나고 있으며, Durbin-Watson지수(잔차의 독립성 검정)는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791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 없이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표 4-17> 참조).

<표 4-17>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 Watson
1	.606 ^a	.367	.358	.528	1.791

a. 예측변수: (상수), 제재와보상, 장애인식, 조세인식

b. 종속 변수: 법인전환

분산분석 결과 F 값은 38.514, 유의확률 P-value 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의 3개의 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충분한 통계적 의미를 갖는 회귀분석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4-18> 참조).

<표 4-18>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분석	32.260	3	10.753	38.514	.000 ^b
1 잔차	55.562	199	.279		
총계	87.822	202			

a. 종속 변수: 법인전환

b. 예측변수: (상수), 제재와보상, 장애인식, 조세인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법인전환 인식 간의 회귀분석 계수는 <표 4-19>와 같다.

계수표에서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1.093 ~ 1.329로서 VIF가 10.0 미만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으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표 4-19>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1	(상수)	.984	.247		3.985	.000		
	장애인식	.222	.062	.226	3.559	.000	.785	1.274
	조세인식	.416	.061	.444	6.825	.000	.752	1.329
	제재와 보상	.063	.055	.067	1.133	.259	.915	1.093

a. 종속 변수: 법인전환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하였고,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791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어 독립적이며,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93 ~ 1.329로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전환 장애인식의 유의확률은 $p=0.000(<0.05)$ 이고, 조세관련 인식의 유의확률은 $p=0.000(<0.05)$ 로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납세자 제재와 보상의 유의확률은 $p=0.259$ 로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종속변수인 법인 전환 인식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표준화 계수 B값이 법인전환 장애인식은 0.222, 조세관련 인식은 0.416으로 나타나 모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관련 인식이 높을수록(B=0.416), 법인전환 장애인식이 높을수록(B=0.222) 통계적으로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

본 회귀분석에서 조세관련 인식의 베타 값은 0.444로서 통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5.8% (조정된 $R^2=0.358$)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표는 <표 4-20> 와 같다.

<표 4-20>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

모형	B	SE	β	t	p	VIF
(상수)	.984	.247		3.985	.000	
장애인식	.222	.062	.226	3.559	.000	1.274
조세인식	.416	.061	.444	6.825	.000	1.329
제재와 보상	.063	.055	.067	1.133	.259	1.093

R 제곱=.367, 조정된 R제곱=.358, F=38.514($p<.001$), Durbin-Watson=1.791

* $P<.05$ ** $p<.01$ *** $p<.001$

독립변수인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종속변수인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검정 결과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가설검정 결과

가 설		p값	검증결과
가설 I	법인전환 장애인식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0	채택
가설 II	조세관련 인식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0	채택
가설 III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9	기각

4.5.2 컨설팅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절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의 조절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과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 투입시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해결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일현, 2014).

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조절변수는 유의하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효과가 없는 것이고,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면 순수조절변수이며,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이고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결정계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최창호, 2018).

또한, 조절변수인 컨설팅 유무는 명목척도이므로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양적 척도화하여 조절변수(더미컨설팅)로 사용하였다(최창호, 2018).

조절효과 분석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제2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제3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과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고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2)이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유의확률 F변화량 값)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4.5.2.1 법인전환 장애인식과 법인전환 인식 간의 컨설팅 조절효과

법인전환 장애인식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컨설팅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4-22>과 같다.

<표 4-22> 법인전환 장애인식에 미치는 컨설팅 조절효과 검증^d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Durbin-Watson
					R ² 변화량	F 변화량	유의수준 F 변화량	
1	.443 ^a	.196	.192	.593	.196	49.068	.000	1.714
2	.451 ^b	.203	.195	.591	.007	1.763	.186	
3	.486 ^c	.236	.225	.580	.033	8.657	.004	

a. 예측변수: (상수), 장애인식

b. 예측변수: (상수), 장애인식, 더미컨설팅

c. 예측변수: (상수), 장애인식, 더미컨설팅, 장애.더미컨설팅

d. 종속 변수: 법인전환

조절변수인 컨설팅을 투입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인 R^2 이 모형2의 20.3%, 모형3의 23.6%로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인 장애.더미컨설팅의 회귀식 설명력 증가분은 0.033($p=0.004<0.05$)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최종 판단을 위해 상호작용항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방향이 타당한지 검증한다(<표 4-23 참조>).

<표 4-23> 조절회귀분석 결과^a(법인전환 장애인식)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1 (상수)	1.706	.231		7.392	.000		
장애인식	.435	.062	.443	7.005	.000	1.000	1.000
2 (상수)	1.674	.232		7.230	.000		
장애인식	.425	.062	.433	6.802	.000	.985	1.015
더미컨설팅	.114	.086	.084	1.328	.186	.985	1.015
3 (상수)	.833	.365		2.279	.024		
장애인식	.661	.101	.674	6.540	.000	.361	2.766
더미컨설팅	.099	.084	.073	1.171	.243	.981	1.019
장애.더미컨설팅	-.251	.085	-.301	-2.942	.004	.366	2.735

a. 종속 변수: 법인전환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조절변수인 더미컨설팅의 t값은 1.171(<1.96)이고, 유의확률은 0.243(>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인 장애.더미컨설팅의 t값은 -2.942(절대값으로 1.96보다 크다)이고, 유의확률은 0.004(<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조절변수는 순수조절변수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최창호, 2018).

4.5.2.2 조세관련 인식과 법인전환 인식 간의 컨설팅 조절효과

조세관련 인식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컨설팅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4-24>과 같다.

<표 4-24> 조세관련 인식에 미치는 컨설팅 조절효과 검증^d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Durbin-Watson
					R ² 변화량	F 변화량	유의수준 F 변화량	
1	.566 ^a	.321	.317	.545	.321	94.842	.000	1.954
2	.566 ^b	.321	.314	.546	.000	.071	.790	
3	.571 ^c	.327	.316	.545	.006	1.708	.193	

a. 예측변수: (상수), 조세인식

b. 예측변수: (상수), 조세인식, 더미컨설팅

c. 예측변수: (상수), 조세인식, 더미컨설팅, 조세.더미컨설팅

d. 종속 변수: 법인전환

조절변수인 컨설팅을 투입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인 R²이 모형2의 32.1%, 모형3의 32.7%로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인 조세.더미컨설팅의 회귀식 설명력 증가분은 0.006(p=0.193>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최종 판단을 위해 상호작용항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방향이 타당한지 검증한다(<표 4-25> 참조).

<표 4-25> 조절회귀분석 결과^a(조세관련 인식)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1 (상수)	1.628	.175		9.283	.000		
조세인식	.531	.055	.566	9.739	.000	1.000	1.000
2 (상수)	1.626	.176		9.229	.000		
조세인식	.528	.056	.563	9.429	.000	.953	1.049
더미컨설팅	.021	.080	.016	.267	.790	.953	1.049
3 (상수)	1.351	.274		4.934	.000		
조세인식	.621	.091	.662	6.863	.000	.364	2.749
더미컨설팅	.011	.081	.008	.136	.892	.944	1.060
조세.더미컨설팅	-.106	.081	-.124	-1.307	.193	.377	2.653

a. 종속 변수: 범인전환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조절변수인 더미컨설팅의 t값은 0.136(<1.96)이고, 유의확률은 0.892(>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호작용항인 조세.더미컨설팅의 t값은 -1.307(절대값으로 1.96보다 작다)이고, 유의확률은 0.193(>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조세.더미컨설팅은 조절효과가 없으며 연구가설은 기각된다.

4.5.2.3 납세자 제재와 보상과 법인전환 인식 간의 컨설팅 조절효과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컨설팅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4-26>과 같다.

<표 4-26> 납세자 제재와 보상에 미치는 컨설팅 조절효과 검증^d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통계 변경			Durbin-Watson
					R ² 변화량	F 변화량	유의수준 F 변화량	
1	.237 ^a	.056	.051	.642	.056	11.933	.001	
2	.262 ^b	.069	.060	.639	.013	2.762	.098	
3	.281 ^c	.079	.065	.638	.010	2.119	.147	2.049

a. 예측변수: (상수), 제재와보상

b. 예측변수: (상수), 제재와보상, 더미컨설팅

c. 예측변수: (상수), 제재와보상, 더미컨설팅, 제재와보상.더미컨설팅

d. 종속 변수: 법인전환

조절변수인 컨설팅을 투입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인 R²이 모형2의 6.9%, 모형3의 7.9%로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인 제재와보상.더미컨설팅의 회귀식 설명력 증가분은 0.01(p=0.147>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최종 판단을 위해 상호작용항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방향이 타당한지 검증한다(<표 4-27> 참조).

<표 4-27> 조절회귀분석 결과^a(납세자 제재와 보상)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1 (상수)	2.615	.202		12.941	.000		
제재와보상	.222	.064	.237	3.454	.001	1.000	1.000
2 (상수)	2.556	.204		12.515	.000		
제재와보상	.210	.064	.225	3.276	.001	.989	1.011
더미컨설팅	.153	.092	.114	1.662	.098	.989	1.011
3 (상수)	2.936	.331		8.869	.000		
제재와보상	.083	.109	.089	.764	.446	.344	2.903
더미컨설팅	.161	.092	.120	1.746	.082	.986	1.014
제재와보상. 더미컨설팅	.138	.095	.168	1.456	.147	.347	2.879

a. 종속 변수: 법인전환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조절변수인 더미컨설팅의 t값은 1.746(<1.96)이고, 유의확률은 0.082(>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호작용항인 제재와보상.더미컨설팅의 t값은 1.456(절대값으로 1.96보다 작다)이고, 유의확률은 0.147(>0.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제재와보상.더미컨설팅은 조절효과가 없으며 연구가설은 기각된다.

4.5.2.4 조절회귀분석 결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가설 검정 결과는 <표 4-28>과 같다.

<표 4-28>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가 설		t값	p값	검증결과
가설 I	법인전환 장애인식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59	.000	채택
가설 II	조세관련 인식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825	.000	채택
가설 III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33	.259	기각
가설 IV	컨설팅은 법인전환 인식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IV-1	컨설팅은 법인전환 장애인식이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2.942	.004	채택
가설 IV-2	컨설팅은 조세관련 인식이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1.307	.193	기각
가설 IV-3	컨설팅은 납세자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1.456	.147	기각

V. 결론

5.1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 납세자 제재와 보상을 독립변수로 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을 종속변수로, 컨설팅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전환 장애인식과 조세관련 인식이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자 제재와 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을 수 없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컨설팅은 조절변수로서 법인전환 장애인식과 법인전환 인식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컨설팅 수진을 통해 법인전환 장애인식을 해소하여 법인전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법인전환 시 진행절차의 복잡성, 과도한 비용의 발생, 자본조달의 부담과 법인전환 후 조세부담의 증가, 경영여건의 악화 등 법인전환 장애인식 요인을 컨설팅 수진을 통하여 경감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어서 컨설팅 수행이 법인전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컨설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법인전환 장애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장애인식 요소를 경감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컨설팅이 개인기업에 제공된다면 법인전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된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조세효과분석, 법인전환 동기분석, 관련규정의 문제점 등 주로 문헌 및 법 규정을 통한 문헌연구들이 많았다. 반면, 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을 내부환경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의 내부환경 요인은 법인전환 장애인식, 조세관련 인식으로 구분하고 외부환경 요인은 납세자 제재와 보상을 독립변수로 정의하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의 필요성에 따라 컨설팅의 조절효과가 법인전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법인전환 장애인식 요인을 컨설팅을 통하여 경감하거나 해소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컨설팅의 활발한 지원이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5.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안 제시

본 연구는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전국에 소재한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법인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설문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둘째, 조절효과로서 컨설팅 수입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컨설팅 분야에는 재무, 인사, 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경우 컨설팅 수행 횟수, 컨설팅 수행 기간,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등 조절요인으로서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다양한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대상의 범위는 전국의 개인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회수된 설문자료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별, 업종별로 설문회수 수를 증가시켜 분석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법인기업을 설문 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조절변수로서 컨설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문을 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며, 설문대상의 범위를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세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의 보다 다양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성천. (2015). “컨설턴트 역량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동모. (2015). 『연구방법론』. 서울: 학현사.
- 권일환. (2008).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준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중석. (2014).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민. (2018).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컨설턴트 역량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 (2005). “중소벤처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제도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운. (2003). “조세가 조직형태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후진. (2014). “경영컨설팅서비스와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재희. (2017). “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컨설팅 만족도와 컨설팅 활용도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근. (2004).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호. (200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수진. (2010). “과세당국의 제재와 보상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정희. (2012). “기업 조직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미치는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삼일인포마인. (2018). 『조세법전』. 서울: 삼일인포마인.
- 성경만. (2018).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건권. (2013).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상복. (2012). “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천식. (1999).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의식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납세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재욱. (201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우현. (2015). “경영컨설팅역량 및 컨설팅완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진. (201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제도의 효과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성. (20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기. (2002). “성실납세 유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납세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기. (2003). “마케팅 환경 요인과 마케팅 전략 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T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미. (201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이재혁. (2017). “절세목적 법인전환 인식에 고소득 개인임대사업자들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철우. (2010). “납세자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철호. (201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실무』. 서울: 코페하우스.

이현주. (2009). “납세자특성과 세무대리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훈영. (2013). 『이훈영 교수의 마케팅조사론』. 서울: 도서출판 청람.

임채철. (2015). “성실신고확인제도상의 제재와 보상이 법인전환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 영. (1997). “경영컨설팅 유형별 성과에 관한 상황적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우소. (2017). “컨설턴트선정기준이 컨설턴트역량지각, 컨설팅 완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아영. (2015).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대. (2005). 『비즈니스컨설팅』. 서울: 남두도서.

조재룡. (201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위한 전사적 프로세스 평가모델 개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형근, 방용성, 정재완. (2016). 『컨설팅 실무』. 서울: 학현사.

채서일, 김주영. (2015). 『사회과학조사 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 최웅용, 배현정. (2005). “납세자의 유형에 따른 납세마일리지의 효과”.
『회계학연구』 제30권, (특별호 제1호). p.303~324.
- 최창호. (2018). 『논문 작성을 위한 SPSS·AMOS 한번에 끝내기』.
서울: (주)피오디컴퍼니.
- 추연길. (2007).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과 조세부담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용수. (200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세청. (2018). 검색일자:2018. 10. 05. <https://www.nts.go.kr> 세무용어사전
- 삼일인포마인주식회사. (2018). 검색일자:2018. 10. 05. <http://www.samili.com> 법률검색



2. 국외문헌

- Barcus, S. W. III, & Wilkinson, J. W. (1995). *Handbook of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2nd ed.), New York McGraw-Hill.
- Block, P. (2011). *Flawless consulting: A guide to getting your expertise used*, NY: Wiley.
- Ciampi, F. (2009). Exploring Knowledge Creation Pathways in Advanced Management Consulting, Information Age Publishing.
- Greiner Larry E., & Robert O., Metzger. (1983). "Consulting to Management", Prentice-Hal.
- Kubr, M. (2002). *Management Consulting : A Guide to the Professio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_____ (1997). *How the Select and Use Consultants*, 2nd, ILO, Geneva.
- Maister, D. H. (1982). Balancing the Professional Service Firm,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1982.
- Steele, F. (1975). *Consulting for Organizational Change*.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Turner, A. N. (1982). *Consulting is more than Giving Advice*. Harvard Business Review, 60(5).
- Williams, A.P.O., & Woodward, S. (1994). "The Competitive Consultant: A Client-Oriented Approach for achieving Superior Performance", The Macmillan Press Ltd, UK.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사(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컨설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컨설팅 유무가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컨설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 얻어진 내용은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응답자의 모든 설문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한한 건승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지도교수 : 주형근

-연구자 : 안성진 (컨버전스컨설팅 전공 석사과정)

-연락처: email : shadowforce821@hanmail.net (010-9635-1997)

I.. 다음은 법인전환 장애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및 “√” 표시 등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법인전환 장애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법인전환 시 진행절차가 복잡할 것이다.					
2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할 것이다.					
3	법인전환 시 자본조달 부담이 과다할 것이다.					
4	법인전환 후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5	법인전환 후 경영관리와 자금부담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II. 다음은 조세관련 인식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또는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세관련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되고 있다.					
2	탈세는 사회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	불성실 신고는 적발가능성이 크다.					
4	세법과 납세절차가 복잡하다.					
5	현재 사업자의 조세부담은 과다하다.					

III. 다음은 납세자 제재와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및 “√” 표시 등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납세자 제재와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개인기업의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규정이 법인전환에 영 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개인기업의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 각하십니까?					
3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인전환 시 취득세 면제 규정이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5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승계 규정이 법인전환에 영향을 준 다고 생각하십니까?					

IV. 다음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및 “√” 표시 등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권유하시겠습니까?					
2	귀하는 법인전환 후 기업의 사회적인식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법인전환이 기업의 절세목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V. 다음은 컨설팅 유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및 “√” 표시 등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컨설팅 유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예	② 아니오
1	귀하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컨설팅을 수임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VI.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및 “√” 표시 등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항 목	내 용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 령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 ~ 40세 미만 ③ 40세 이상 ~ 50세 미만 ④ 50세 이상 ~ 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3	매출규모	① 5억 미만 ② 5억 이상 ~ 10억 미만 ③ 10억 이상 ~ 50억 미만 ④ 50억 이상 ~ 100억 미만 ⑤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⑥ 500억 이상
4	지 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대전 ⑤ 세종 ⑥ 충남 ⑦ 충북 ⑧ 부산 ⑨ 대구 ⑩ 울산 ⑪ 경남 ⑫ 경북 ⑬ 광주 ⑭ 전남 ⑮ 전북 ⑯ 강원 ⑰ 제주
5	학 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학교졸 ④ 대학원졸(대학원재학 포함) 이상
6	사업업종	① 축산업, 수렵업 및 임업 ② 어업 ③ 광업 ④ 제조업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⑥ 건설업 ⑦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⑧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금융 및 보험업 ⑪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⑫ 교육서비스업 ⑬ 보건업 ⑭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⑮ 가사서비스업 ⑯ 기타
7	사업기간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in Private Companies – Focusing on consulting adjustment effect

Ahn, Sung Jin

Major in Convergence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Private companies and corporate firms differ in setting up, operating and liquidating, and are subject to consideration for corporate conversion due to various motives such as tax reduction, risk distribution, capital procurement, and specialized management. In other words, when a private company transfers to a corporate firm, the amount of income may be transparent, tax-reduction effects may be affected by differences in tax rates, improving external credit and managerial efficiency, and limiting liability due to limited liability.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private companies' corporate conversion to managers of more than 200 private companies nationwide and identifies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on how consulting i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according to the need for consul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sability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and the tax recognitio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The tax payers' sanction and compens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spectivel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djustment effect of consulting, consult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and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This is because consulting helps solve the problem of the disability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and positively affects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alleviate or eliminate the factors of the disability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such as complexity of proceeding procedure, occurrence of excessive cost, burden of capital procurement, increase of tax burden after corporate conversion, deterioration of management condition. This means that consulting performanc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The research confirms that the factors of the disability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can be mitigated or resolved through consulting, and that active support of consulting for private companies considering corporate conversion is necessary at the government policy level to ensure smooth corporate conversion.

Key Word : private company, corporate firm,
corporate conversion,
disability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
tax recognition,
tax payers' sanction and compensation,
consulting,
and recognition of corporate conversion